

제 499 호

1975.4.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장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제	제 949 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	3
◎ 규	칙	제 1464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9
	제	제 1465 호	서울특별시립 교향악단설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10
◎ 고	시	제 59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설정 및 지적승인	10
	제	제 60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	11
◎ 공	고	제 94 호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변경공고	12
	제	제 97 호	환지예정지 변경공람공고	13
	제	제 98 호	새종로 특정가구정비지구진속계획공람공고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99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13
◎	예	규	
	제 291 호	서울특별시 경찰민원봉사실 운영규정 시행요령	14
◎	사	령	29
◎	정	칙 (조례 제 946 호)	3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49 호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1 항중 "2월내에"를 "2
월내의"로 한다.

제 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의 2 (권취사업의 제한요구) ①
구청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
수 의무자가 영세 27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시세를 제납한
때에는 그 제납자가 허가, 인가,
면허 및 동부과 그 경신(이하
"허가등"이라한다)을 제정권청에
신청하였거나 산청할 것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그 제납
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지 아니
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주무
관청에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식민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제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의
성명 또는 명칭
2. 제납액
3. 기타 참고 사항

제 8 조 제 3 항중 "주민세"를 "시
세"로 "전 3 항"을 "제 1 항"으로
"신청서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
다"를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로 한다.

제 13 조중 "① 주민세"를 "주민세
"로 하고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법인"을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제단 및 단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 16 조중 "법제 76 조 제 3 항"을
"법제 76 조 제 3 항 및 제 4 항"
으로 하고 "특별징수외무자" 다
움에 "또는 납세조합"을 삽입
한다.

제 17 조 제 1 항 본문중 "그위득자에

계 부과한다"를 "그취득자(운수
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중 사실상
의 소유자가 따로 있유이 당해
운수사업체의 차주 대장 영업세 납
세실적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
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에게
부과한다"로 하고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함으로써 법제 22조 제 2호의 규정
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
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
에 취득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그법인의
과세 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의 소재지 또
는 등록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관할 구청장이
그 가액의 비례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의
취득과세자료를 포착한 구청장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
격명세서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
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 하여
야 한다.

제 18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제 84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
득세율은 제 1 항의 세율의 100 분
의 750 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
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는 또한 같다.

제 18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8 조의 2 (세율적용) ①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가 그 취득후에 별장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
는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
터 5 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급주택, 별장·골프장 또는 고
급오락장을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피스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 제 1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신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 대상 물건은 예외로 한다.

④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 20 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10 항을 삭제한다.

④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공사 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1 조 중 "제무"를 "임무"으로 한다.

제 24 조 제 4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후자동차를 세차로 대체와 동시에 폐차하였을 경우의 폐차분에 대하여는 폐차일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7 조 (세율) 자동차용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 1종상소 요금의 100분의 30

제 2종상소 요금의 100분의 15. 다만, 승박의 경우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10

제 3종상소 요금의 100분의 5

제 53 조 중 "법제 161 조"를 "영제 124 조"로 한다.

제 55 조를 삭제한다.

제 56 조 제 2 호 중 "1월 말일까지"를 "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 57 조 제 1 호 및 동조 제 2 호 중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을 각각 "또는 영제 134 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 59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9 조 (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1) 주거용 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의 제차로 각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3 으로 한다.

- 100명 이하 1,000분의 3
- 100명 초과 1,000분의 5
- 200명 초과 1,000분의 10
- 300명 초과 1,000분의 30
- 500명 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 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공한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5) 전 과목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가옥

(1)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제차로 각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500만원 이하 1,000분의 3
- 500만원 초과 1,000분의 5
-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2,0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전 과목외의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①목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구

1㎡당 3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납기) ①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가옥,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6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제188조 제1항 제1호(3)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불 소유한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기계시일 30일전까지 공

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 기간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한후 이를 신고케 할수 있다.

제 62 조 본문중 "가옥의 소재, 종별, 용도, 면적"을 "가옥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벽및 지붕), 용도, 층수, 면적"으로 하고 동 조 제 5 호중 "주소, 종별 또는 용도를 변경하였거나"를 "구조(벽및 지붕) 또는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또는"로 하여 동 조 본문을 제 1 항으로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남색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외 특수한 부대설비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관한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68 조 제 1 항중 "승확량 2.5kg에 상당하는 금액을" "373,000 원"으로하고 동 조 제 2 항중 "8 원"을 "37,000 원"으로하여 동 조 제 4 항중 "50 원"을 "100 원"으로 한다.

제 69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자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잡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제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 이하의 금액 : 100분의 6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8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10

2. 물류

각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제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 이하의 금액 : 100분의 10

15만원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15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20

제 72 조 제 1 호중 "500 원"을 "1,500 원"으로하고, 동 조 제 2 호중

" 300 원 " 을 " 900 원 " 으로 한다.
 제 73 조 제 1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 중 " 전항 " 을
 " 제 1 항 " 으로 " 40 일 " 을 " 30
 일 " 로 한다.
 2. 율류
 제 1 기 : 8 월 16 일부터 8 월 30 일까지
 제 2 기 : 12 월 16 일부터 12 월 30 일까지
 제 75 조를 삭제한다.
 제 77 조 중 " 가옥의 소유자에게 부과
 한다 " 를 " 가옥에 대하여 납기계
 시일 현재의 소유자 (법제 182 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부과한다 " 로 한다.
 제 7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9 조 (토지 및 가옥의 범위)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은 영제 195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가옥으로 한다.
 제 8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토지 및
 가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하
 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고지
 서에 병기하여 발부한다.
 제 87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제 93 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의 제 1 항, 제 2 항과 제 3 항
 을 각각 별지와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법률제 2743 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56 조의 규정은 1976 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자 동 차 세 액 표

1. 승용자동차 (4 기종 초과)

등급	축 간 거 리	1 대 당 년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8 기종미만	8 기종이상
1	275 센티미터이상	84,000 원	1,122,000 원	1,320,000 원
	275 센티미터미만	40,000 원	544,000 원	640,000 원
2	275 센티미터이상	67,200 원	897,600 원	1,056,000 원
	275 센티미터미만	32,000 원	435,200 원	512,000 원

2. 소형승용자동차 (4기통이하)

등급	배기량	1대당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	1,500cc이하 초과	30,400원	249,000원
	1,000cc이하 초과	26,000원	172,800원
	1,000cc이하 이하	21,200원	96,000원
2	1,500cc이하 초과	24,400원	199,800원
	1,000cc이하 초과	20,800원	138,600원
	1,000cc이하 이하	16,800원	76,800원

3. 기타소형승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대당년세액	16,800원	51,200원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 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6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8조 (여행중지로 인한 여객운
임의 반환)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여행을 중지한 데
에는 이미 지불한 여객운임에서
불승구간에 대한 소정의 여객운임
을 반환한다. 이 경우 원 승차
권이 할인 승차권일 때는 할인 여
객운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때
수수료는 수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4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465 호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3 항중 "위원은 수석연주자 이상의 단원 중에서 부단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수석연주자 이상의 단원 또는 사계지명인사 중에서 부단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59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 4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 장	중구명동 1가 53 - 1,52번지	782 ㎡	디스카운트 스토어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 (출장소)에 보편.</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p> <p>결정 및 지적 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전설부고시 제 6 호 (74.</p>		<p>1.5)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 4. 30.</p> <p>서울특별시 장</p>	
가. 시설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학 교	시내성동구 행남동 산 8 - 2부근	416,700 ㎡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성동구청에 보편.</p>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94 호

서울특별시유로도로
통행료변경공고

서울특별시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 1975.5.1 부터 유로

도로통행요금을 변경시행함에 따라
통행요금 및 징수기간등을 유로도로
법제 10 조 및 동시행령 제 8 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1975. 4.

서울특별시장

1. 통행료의 징수자 : 서울특별시장
2. 통행료 및 징수기간

요금. 징수 도로명칭 기간	징 수 기 간	징수대상및금액	비 고														
강 남 4 로	1967.9.23 ~ 84.1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차종</td> <td>요금</td> </tr> <tr> <td>2륜차</td> <td>20 원</td> </tr> <tr> <td>3륜차</td> <td>20 원</td> </tr> <tr> <td>승용차</td> <td>50 원</td> </tr> <tr> <td>화물차</td> <td>50 원</td> </tr> <tr> <td>버 스</td> <td>50 원</td> </tr> <tr> <td>특수차</td> <td>100 원</td> </tr> </table>	차종	요금	2륜차	20 원	3륜차	20 원	승용차	50 원	화물차	50 원	버 스	50 원	특수차	100 원	※강변 2 로 신설 자 : 성동구 성수동 685 지 : 성동구 자양 동산 18
차종	요금																
2륜차	20 원																
3륜차	20 원																
승용차	50 원																
화물차	50 원																
버 스	50 원																
특수차	100 원																
강 남 3 로	1972.1.1 ~ 2010.12																
강 변 4 로	1979.1.1 ~ 1992.12																
강 변 3 로	1971.1.1 ~ 1983.12																
북악스카이	1968.8.15 ~ 1980.2.25																
남 산 2 호	1971.12.15 ~ 2010.12.14																
남 산 1 호	1970.8.15 ~ 2003.12.31																
북악터널	1971.7.1 ~ 1995.12.31																
강변 2 로(신설)	1973.1.1 ~ 1985.12.31																

3. 통행료 면제차량 또는 통행인
종전과 동일. (유로도로법. 제 8
조 및 동시행령 6 조에 해당하는 차량)

4. 통행료징수방법
통행요금은 현금 또는 시장이발행하는 통
행권 및 회수권으로 징수함.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7 호

환지에정지환경분담공고

1. 역촌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미공사 지역으로 환지처분 보류지인 142구획의 환지에정지 지정지물 급변공사계획 수립으로 소정의 환지감보율을 적용(4.2% 증가)하여 환지에정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제 55 조 및 제 56 조,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에정지 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1과에 비치하고 있음.
3. 서투송달은 별도 환지에정지 계획변경에 관련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것이나 수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4. 변경조서 별첨
첨부 : 관계도면 (생략) . 끝

1975. 4. .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8 호

세종로특정가구정비지구건축계획공람공고

1.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5수출목표액
1011	삼정 다연공업사	박한수	도봉구창동 130-16	염색가공	1,200,000
942	국시회사용신주자소	김봉우	영등포구문래동6가44	주물	1,320,000

1. 건축법제 33조의 2, 제 33조의 3 및 동 시행령 제 1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로특정가구정비지구 (도림, 당주, 신문로 1가, 세종로 각각일구 18, 126㎡) 에 대한 건축계획을 별첨도서와 같이 작성하였기 이를 공람공고 한다. (단, 서울특별시공고제 35 호 (75.2.15)에 의한 지구내 가각일부에 대한 건축계획도 본계획에 변경포함되었음)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축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간 일반인의 공람에공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관계도서 : 생략

1975. 5. 1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9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및지정취소공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및 자금지원요령 제 3 조제 4 조 및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및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4. 30

서울특별시 장

단위 : \$

2. 지정위소 업체					
지정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위소사유
705	동남아실용공업사	손명규	마포구 도화2동39-4	액타	폐업무단전출.
726	정실복수고무공업사	김용주	마포구대흥동469-42	안화공창굴	대기업으로전환
1029	대성권선구시회사	한정훈	도봉구미아동 61-3	나동선	타도전출

예 규

서울특별시 경찰민원봉사실운영규정
시책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4. 30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서울특별시예규제 291 호

서울특별시경찰민원봉
사실운영규정시책요령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내무부 예규
제 298 호 (74.4.2 개정) 경찰민원봉
사실운영규정 제 15 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경찰민원봉사실 (이하 민
원실이라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과 청구행정의 세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
무처리규정 및 동시행세칙과 내무부
예규 제 298 호 경찰민원봉사실운영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설치) 민원실은 경찰국과 경
찰서에 설치한다. 단 청사가 파
로 미려져 있고 업무량이 많은
경찰구표동과 면허제는 민원실을
따로 설치 운영한다.

제 4 조 (편제 및 정원) ① 민원실은 국,
시 공히 경무과장 산하에 둔다.
② 민원실에는 실장을 두되 경찰국
은 경감으로 보하고 경찰서에는 경위
를 배치한다. 단 경찰서에 있어서 현
원사정으로 경위를 따로 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경무계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국, 시별 민원실의 정원은 다음과같
이 정하고 업무분담별 인원 배
정은 별표 1과 같다.

1. 경찰국

실장	경장	1명
경사	2명	경장 4명
순경	5명	

2. 경찰서

실장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2명
순경	2명	계 6명

단, 경사 1명과 경장 1명은 감찰 담당과 문서통제담당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3. 보안소관 민원접수 및 고소, 고발 접수담당직원은 보안 수사과 배치현원 중에서 전용할 수 있다.

제 5 조 (민원실시설) ①민원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별도 1과 같은 민원창구 시설외에 민원상담에 편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청사 및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한 때에는 민원상담실은 민원실과 가까운 장소를 선정 대응할 수 있다.

제 6 조 (민원서류의 접수) ①민원사항에 관한 모든 민원서류(고소, 고발포함)는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단, 구비서류가 마비되었을 때에는 즉시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즉 철저하게 교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접수는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접수하고 별지서식 1호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등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은 접수증을 발부하지 아니한다.

③주무과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실에 회부 접수절차를 거친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원동기, 중포화약류 관계민원사항으로서 경찰서 경유 경찰국에 접수되는 민원도 전항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민원서류의 처리) ①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즉시처리 민원사무와 주무과 회부처리 사항으로 구분 처리한다.

②주무과 회부처리사항은 별지서식 1호 접수증부본을 첨부(고소, 고발발제 외) 1 근무시간내에 주무과에 회부한다.

③주무과에서 민원처리결과(중간회시, 지연통지, 최종처리결과회시, 고소, 고발사건의회명, 이첩, 송치결과통지등)를 회시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실을 경유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인가중등을 발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제 민원실에서는 비치되어 있는 민원사무처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피중 처리결과 회시시는 접수회부시 첨부되었던 접수중 부분에 처리내용을 명시(책임간부확인 날인)하고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고소, 고발, 진정등 수사, 검찰소관 민원으로서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였을 때에는 접수부에 등재한후 민원서류와 함께 민원인을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민원실에서 직접 진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8 조 (즉석민원처리) ①전조 1항 규정에 의한 즉석처리민원사무종목은 별표 2와 같다.

②즉석처리민원사무는 그 사무관할에 구애없이 민원실장이 관장 건설 처리한다.

③민원실장이 즉석처리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기록과의 대조확인 열람, 관계대장의 기재정리등으로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 회시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과계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한다.

④전 3항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민원은 별지서식 2호의 즉석민원처리부에 등재하고 완결된 문서에는 문서처리인을 날인 처리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즉일로 주무과에 회송한다.

⑤민원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교통과 면허계 소관 즉석처리민원사무는 면허계장 부책하 면허계 민원실에서 따로 접수 처리한다.

제 9 조 (민원서류통제) ①민원사무처리 규정 제 13 조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 민원실장이 겸무한다.

②모든 민원서류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하며 통제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의 통제란에 별지서식 3호의 통제검열인을 날인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3. 결재구분의 적정여부
4. 처리기한의 경과여부

③통제관은 일일민원접수처리 및 통제상황을 별지서식 4호의 민원

처리 일일결산부에 의거 일보한다.

④통제관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7 조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상황검열을 매월 1회 실시하고 별지서식 5호의 민원처리상황검열부에 의거 결과보고 한다.

제 10 조 (독촉장발부) ①통제관은 각과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서식 6호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발부상황을 별지서식 7호의 독촉장발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독촉장발부요령은 보고통제규정 (대통령령제 6445호) 제 17 조, 제 19 조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2차독촉 처리기간 3일경과시는 감찰제에 외부 관계지원을 문책한다.

제 11 조 (민원상담) ①민원상담에 당하는 직원은 항상 각과제와 협조하여 진지하고도 책임있는 언행으로 상담에 응하여야하며 상담절차는 별지서식 8호의 민원상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상담의 내용이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원계사항일 때에는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한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부무자세) 민원실 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1. 겸손한 언어와 성의있는 접무 태도로서 친절을 다할것.
2. 제복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할것.
3. 이식을 엄금하며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접수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 말것.
4. 항상 관계법규연구 및 실무능력향상에 노력하여 민원안내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것.

제 13 조 (민원처리책임자) ①전제 7 조 2항규정에 의하여 민원실로부터 접수 이송된 민원사무처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과에 민원처리정, 부책임자를 둔다.

1. 경찰국

정책입자 : 각과업무담당계장

부책임자 : 소관업무담당경위

2. 경찰서

정책입자 : 각과업무담당계장

부책임자 : 각과사무담당계장

다만, 보안제, 경비계소관 민원처리부 책임자는 보안제는 소년담당경위, 경비계는 방위계장으로 한다.

②정책입자는 소관민원업무처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부책임자는 정책입자 유고시에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각과에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시행세칙 제2조규정의 민원사무처리부를 비치하고, 정·부책임자는 처리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서류의 비치) ①민원실에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세칙 제2조규정의 서식)

2. 구술 및 전화등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시행세칙제2조2항규정의 서식)

3. 민원서류접수증

4. 즉석민원처리부

5. 독촉장및독촉장발부대장

6. 민원상담부

7. 민원사무편람제법령 및 규정철

8. 민원사무편람

②상기부책중 민원사무처리부는 업무량을 고려, 단일부책 또는 수개의 부책으로 나누어 비치할수 있다.

③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종별로 근거법규, 처리주무과, 처리기간,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등 민원인에게 편리한 안내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협조사항) 문서통제관은 민원통제관의 통제를 거치지 않는 민원서류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필히 민원실을 경유 시행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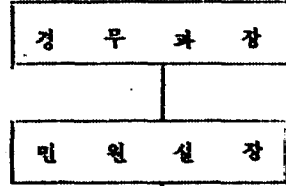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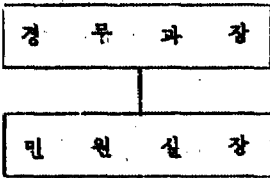
②1972년 12월 30일 경찰민원봉사실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민원봉사실업무분담별인원배정

1. 경찰국

2. 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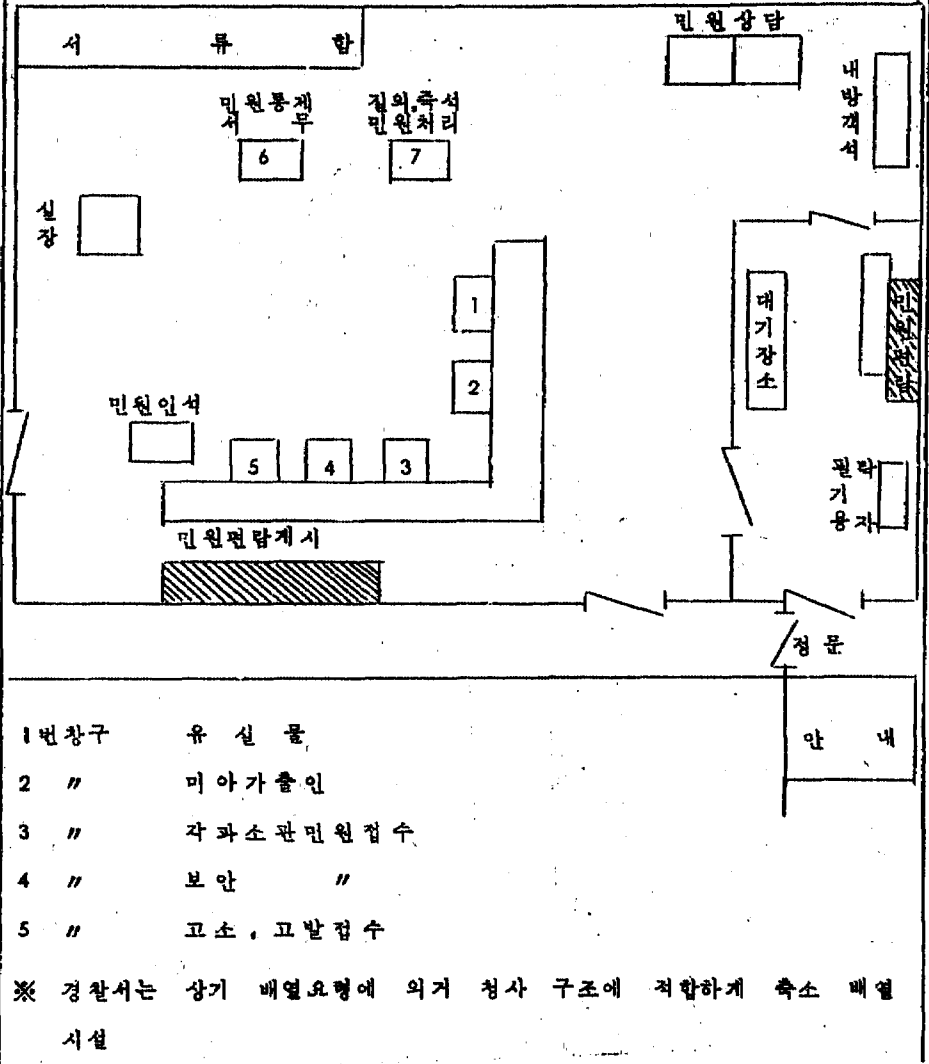


민원 통제 및 사무	S.1
주석민원처리질의(경미사항)	S.1
유실물수배	P.1
가출인미아신고	P.1
보안소관민원접수전담	SP.1
교소·교발접수	SP.2
각과소분(기타)민원접수	P.1
민원상담	SP.1 P.1
안내·출입자통계	SP.1 P.1

진점접수및주석처리 (감찰담당경무)	S.1
민원 통제 (문서통제담당경무)	SP.1
교소·교발접수	SP.1
미아·가출인신고 보안소관민원접수	P.1
안내(출입통계) 각과소관민원접수	P.1

<별도 1>

민원봉사실 평면도



〈별표 2〉						
민원봉사실주석처리민원사항						
기능별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근거법규	비고
			원형	개정		
공통	사함	질 의	7	5	민원사무처리규정제 2 조	주일처리할수있는경미한사항
		사실증명 및 확인	즉시		상 동 제 2 조	
경우		전공사상확인원	7	4	군사원호보상법 제 6 조 동시행령 제 1 조	
		전공사상유족증명	7	4	상 동	
		경력(퇴직)증명원	즉시		민원사무처리규정제 2 조	
보안		고물영업소관리자책임신고	"		고물영업법제 5 조 1, 2 항 동시행령 제 6 조	
		고물영업휴업 및 폐업신고	"		고물영업법제 5 조 3 항 동시행령 제 7, 8 조	
		고물상허가신청외변경신고(기계)	1		고물영업법제 5 조 3 항 동시행령 제 9 조 1 항	
		고물상허가증재교부신청	1		고물영업법제 10 조 2 항 동시행령 제 16 조	
		전당포폐업, 휴업신고	즉시		전당포영업법제 4 조 2 항 동시행령 제 6, 7 조	
		원동기경신검사면기신청	5	즉시	원동기단속법 18 조 1, 2 항 동시행령 제 12, 13 조	
		원동기취급면허기계사함변경	4	3	원동기단속법 제 12 조 동시행령 제 23 조	
		원동기계증서재교부신청	4	3	원동기단속법제 40 조	
원동기사용폐지신고	즉시		원동기단속법 35 조 1 항 동시행령 제 38 조			

구분 기종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근거법규	비고
		현행	개정		
보	원동기취급책임자선임변경신고	1		원동기단속법 29 조 2 항 동시행령 32 조	
	원동기신고사항변경신고	1		원동기단속법 35 조	
	미아, 가출인신고			경찰관지무집행법	
	유실물사무			유실물법	
안	유선업폐업신고	3	즉일	유선영업법 5 조 단속법 6 조	
교	도선업폐업운휴신고	7	"	도선업단속법 4 조 동시행령 8 조	
	운전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	즉시		도로교통법시행령 52 조 5 항	면허계 민원실
	운전면허기재사항변경	3	즉시	도로교통법 62 조 동시행령 53 조	"
	운전면허경력증명	즉시		도로교통법 57 조 동시행령 제 23 조 2 항	"
	긴급자동차지정	3	1	도로교통법 2 조 동시행령 2 조 1 항	
	긴급자동차지정증제교부	3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1 조 4 항	
	자동차보험의금지및제한구역통행	1		도로교통법 6 조 1 항 서울시교시 709 호	
	자동차승차또는적재초과의하차제한	1		도로교통법 33 조 1 항 동시행령 17, 18 조	
	운전면허증제교부신청	3	즉일	도로교통법 60 조 동시행령 51 조	면허계 민원실
	국의운전면허교부신청	2	"	도로교통법 66 조 동시행령 55 조 2 항	"
통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	4	"	도로교통법 61 조 동시행령 52 조	"
	교통사고증명	1	즉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서식 1호>

№	접 수 증 (을)
	197
민원서류명 :	
종 수 :	
유 침 물 :	
처 리 기 간 :	197 까지
민원인주소성명 :	
처 리 결 과 :	
	확 인 자
	과 계 경

№	접 수 증 (갑)
	197
민원서류명	
종 수	
유 침 물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류는 197 까지 처리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97
과 서	민원봉사실 경
	귀 하

○ 원본여첨부 제출
수무과회부처리후

○ 원제인에게
교부

(규격 : 16절지)

<서식 2 호>

국 석 민 원 처 리 부

접 수 번호	접수 또는 처리 일일	접수 또는 처리 담당자	민 원		민 원 인		협조 또는 조치		처 리 결 과	원 본 수령인	확 인 자 인
			사무명	주 소	성명	취급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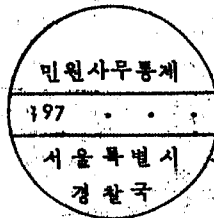
(규격 : 16절치형으로)

※ 기 제 요 령

1.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 민원실에서 취급처리한자 성명기입
2. 협조 또는 조치 : 관계 과제와 협조하였을시 취급자는 협조한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내용은 협조내용 기재
3. 원본수령인 : 처리완결후 원문을 주무과 제에 인계시 수령한 자
4. 확인자는 민원실장 처리상황 확인

<서식 3 호>

민 원 통 제 검 열 인



직경 2 cm

<서시 4 호> 민원처리일일결산부

기능별	구분	접수건수	즉석처리	주무과외부	시행건수	비고
누	계					
경	무					
보	안					

(규격: 16절지)

<서시 5 호> 민원처리상황검열부

검열일일		검열건수	
검열관		지적건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접수		기능별	민원사무명	지적사항	조치내용
번호	날일				

(규격: 16절지형으로)

<서시 7 호> 독촉장발부대장

발부일련번호	수신	민원접수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민원인주소·성명	독촉장			민원통계관확인
		접수번호	접수날일				1차	2차	제출일자	

(규격: 16절지형으로)

<서시 6 호>

< 목 추 장 >
 기 관 명

계 호
수 신
참 조
제 록

197

차 록 추 장

1. 민 원 인

 주 소 :

 성 명 :

2. 민원사무명

3.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197 계 호

4. 제출 (처리) 기간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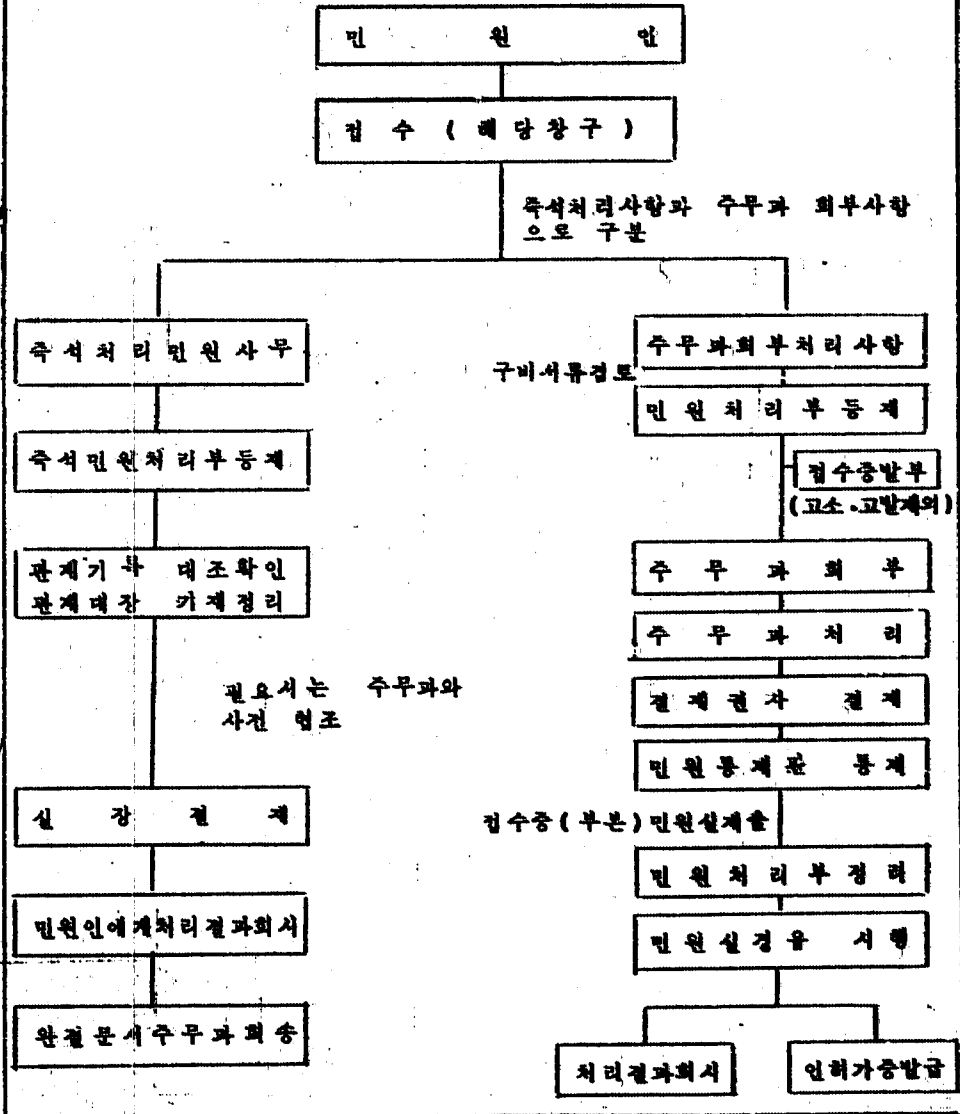
위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제 차 록 추 장 하니 197

까지 처리하고 결과 보고할 것.

국(시) 민원 사무통제관

(규격 : 16 절 적색경지)

민원실 업무처리 체계



< 별지 8 호서식 >

민원 상담부

구분	추결	사후처리
일계		
누계		

상담월일	상담자주소·성명	상담내용	처리결과	확인

※ 확인란은 민원봉사실장이 확인날인
 (규격: 16절지)

사 명

○ 1975.4.25

번 순 자

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종로구보건소근무를 병함.

○ 1975. 5. 1

은평출장소 지방토목
기원보
서대문구근무를 병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기원보
서대문구근무를 병함.

김기석

김진욱

배종기

○ 1975. 5. 2

성 명	발 명 사 항		현 직		
	부 서	자 위	부 서	직 위	직 급
이 울 삼	기획담당판실	기획조정제장	시설관리과	공작관리제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정 원	"	심사분석제장	주택행정과	옹지 1 제장	"
허 완	총 무 과	차 량 제 장	건설행정과	보 상 제 장	"
이 계 완	인 사 과	조지관리제장	도시계획과	종합계획제장	"
서 정 희	행 정 과	행 정 제 장	인 사 과	조직관리제장	"
김 성 순	세마음지도과	제 학 제 장	도시행정과	정 리 제 장	"
김 현 중	"	세마음지도제장	시설관리과	윤로도로제장	"
진 영 호	순찰담당판실	순찰 2 제장	공무원보육원 교수부교과과	지 도 제 장	"
곽 만 영	회 계 과	서 무 제 장	순찰담당판실	순찰 2 제장	"
김 성 배	"	지 출 제 장	회 계 과	서 무 제 장	"
김 운 배	관 계 과	재산처분제장	계 량 1 과	계 량 1 제 장	"
이 장 열	의 약 과	병원운영제장	건설행정과	중기관리제장	"
이 상 식	사 회 과	구 호 제 장	도시행정과	처 분 제 장	"
이 경 배	아 동 과	아동시설제장	세마음지도과	세마음지도제장	"
홍 기 화	청 소 2 과	업 무 제 장	양서출장소	총 무 과 강	"

성 명	발 명 사 랑		현 지		
	부 서	직 위	부 서	직 위	직 급
방 일 호	상 정 과	소비자보호계장	양 정 과	경 리 계 장	지방행정사무관
황 정 환	공 업 과	표 준 계 장	기획담당관실	심사분석계장	"
최 승 용	양 정 과	경 리 계 장	조 경 과	조경 1 계 장	"
양 재 욱	조 경 과	조경 1 계장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계장	"
김 의 재	도시행정과	관 리 계 장	관 광 과	관광사업계장	"
김 별 통	"	정 리 계 장	공 업 과	표 준 계 장	"
황 철 민	"	치 분 계 장	관 제 과	재산치분계장	"
윤 치 중	건 속 과	건축행정계장	개 랑 2 과	관 리 계 장	"
김 두 기	주택행정과	주택행정계장	운 수 1 과	운수행정계장	"
심 언 호	개 랑 2 과	관 리 계 장	용 산 구	주택과장	"
수 화 중	도시계획과	종합계획계장	업 무 과	예산계장	"
박 희 중	운 수 1 과	운수행정계장	도시행정과	관 리 계 장	"
최 경 수	운 수 2 과	운수 2 계장	건 속 과	건축행정계장	"
이 달 수	관 광 과	관광사업계장	청 소 2 과	업 무 계 장	"
오 기 철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계장	주택건설사업소	자재관리계장	"
신 욱 범	"	보 상 계 장	주택행정과	주택행정계장	"
고 흥 국	"	중기관리계장	상 정 과	소비자보호계장	"
박 한 경	시설관리과	공지관리계장	재활본부관리과	서 무 계 장	"
조 삼 섭	"	유로도로지장	은평출장소	침 소 과 장	"
문 병 규	업 무 과	예산계장	회 계 과	지 출 계 장	"
강 석 근	지하철본부관리과	서 무 계 장	의 약 과	병원운영계장	"
김 경 호	주택건설사업소 소 관 리 과	자재관리계장	아 동 과	아동시설계장	"
박 치 원	관악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	중 로 구	세 무 2 과 장	"
김 재 성	도시가스사업소	서 무 과 장	연 로 시험소	소 장	"
박 봉 일	연 로 시험소	소 장	도시가스사업소	서 무 과 장	"
김 기 동	장 제 장	장	관악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	"

성 명	발 명 사 항		현 직		
	부 서	직 위	부 서	직 위	직 급
김 중 인	소년기술원	원 장	아동보호소	소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완 규	종 로 구		영 등 포 구	세무 1 과장	"
정 태 복	도 봉 구		소년기술원	원 장	"
두 병 기	용 산 구		천호출장소	시 민 과장	"
양 재 정	은 명 출장소		도 봉 구	산업 과장	"
전 만 진	영 등 포 구		사 회 과	구호제장	"
이 상 익	천호출장소		장 제 장	장 장	"
신 태 시	양서출장소		출 무 과	차량제장	"

정 정

시보제 497 호 (1975.4.23) 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조례제 946 호 (서울특별시공원조제중개점조제) 의 비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어린이대공원)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75. 4. 23

서울특별시 장

오				정			
구 분	대 인	소 인	비 고	구 분	대 인	소 인	비 고
놀이동산	50원내	30원내	01회예	놀이동산	50원내	30원내	01회예
하늘차	120 "	60 "	이하예	하늘차	120 "	60 "	0소인은4세
청용열차	120 "	60 "	0소인은	청용열차	120 "	60 "	~14세
미니레일	120 "	60 "	4세~14	미니레일	120 "	60 "	이내
번개차	120 "	60 "	세이내	번개차	120 "	60 "	
두꺼비차	120 "	60 "		두꺼비차	120 "	60 "	
아기차	-	60 "		아기차	-	30 "	
꼬마기차	80 "	30 "		꼬마기차	80 "	40 "	
맹이놀이	80 "	40 "		맹이놀이	80 "	40 "	
비즈카포	80 "	40 "		비즈카포	80 "	40 "	
달로켓트	60 "	40 "		달로켓트	60 "	30 "	
요술집	60 "	30 "		요술집	60 "	30 "	
회전집	무 료	무 료		회전집	무 료	무 료	
풍차놀이	"	"		풍차놀이	"	"	
회전그네	"	"		회전그네	"	"	